

의안번호	제 120 호
의결년월일	1996. 11. 26.
의결사항	원안가결

발의자	김인수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6.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견

수 신 : 의 장

제 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
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건 1부. 끝.

발 의 자 :

김인수 (인)

(찬 성 의 원 서 명 : 붙 임 참 조)

■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및개발행정,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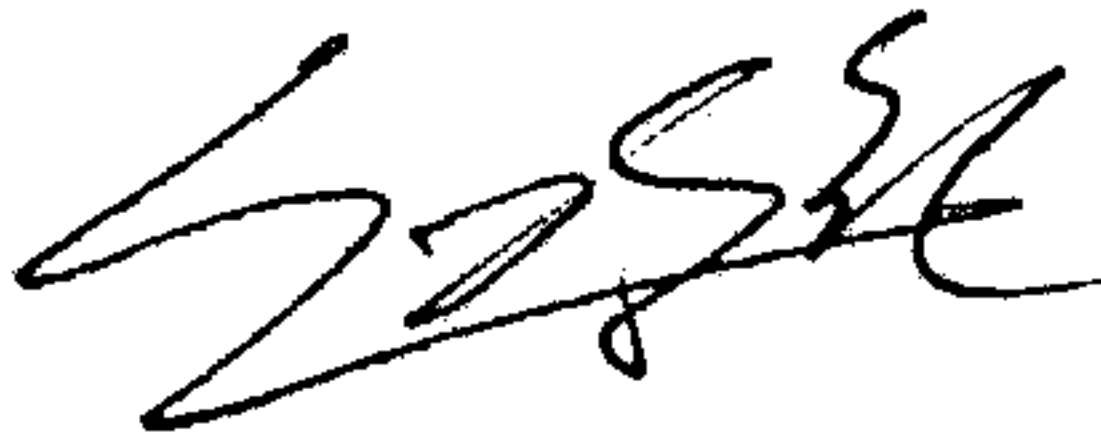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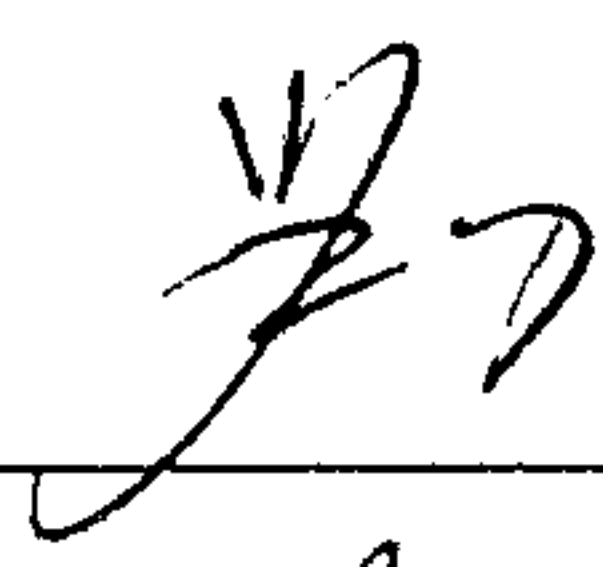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

위원장 : 류정은 의원

간 사 : 박병수 의원

구 분	담 당 실 과	소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일반행정분야 (제1소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	송 순 상	유 병 국 박 병 수 류 정 은
사회복지행정분야 및 개발행정분야 (제2소위원회)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김 인 수	방 창 우 박 홍 식
산업행정분야 (제3소위원회)	농정과 산업과 산림과 지도소	이 홍 식	조 강 천 유 성 태

의안찬성의원서명

성명	서명	(인)
조강현		
이홍익		
이명우		

